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218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3

1. 전략산업 등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 3

Ⅰ. 개요

1.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21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훈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8. 18.

(3) 회 부 일 : 2025. 8.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비용의 일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앞세워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가 없어 타국과의 가격 경쟁 등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산업에 있어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최저한세액 등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등 국가전략기

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하여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생산비용 세액공제 신설

가. 전략산업 등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신 설>	□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의	□ 전략산업 국내생산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의 35)	□ 전략산업 국내생산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의 35)	□ 국가전략기술 활용 생산재화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의 35)	□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의	□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의	□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의	□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의	□ 국내생산촉진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의 35)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신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35)				35)	35)	35)	35)		설(안 제100조의35)
	○공제대상: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공제요건을 갖추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공제대상: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전략산업제품")에 관한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공제대상: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전략산업제품")에 관한 생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제요건을 갖추	공제대상: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제요건을 갖추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공제대상: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공제요건을 갖추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공제대상: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공제요건을 갖추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공제대상: 내국인이 공제요건을 갖추어 재생에너지 설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량 또는 생	공제대상: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공제요건을 갖추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공제대상: 내국인이 공제요건을 갖추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철강 관련 재화, 그 밖에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국가 경제 안보	공제대상: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공제요건을 갖추어 탄소중립, 항공·우주, 첨단소재·부품·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청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생산비용	전략산업제품을 최종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전략산업제품 판매가격	어 국내에서 전략산업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제품 판매가격의 1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	바이오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이하 "국가전략기술재화")를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출고가격의 최대 10% 이내에서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	청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해당 생산비용	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소형모듈원자로, 양자컴퓨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	산비용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판매수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하여 계	장비, 방위산업, 발전시스템, 원자력 등 신성장·원천기술사업 및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사업에서 대통령령으로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국가전략기술재화 생산비")에 재화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산한 금액	정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
	○공제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요건: 판매된 전략산업 제품이 국내에서 최초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공제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하는 경우에는 적용 배제								
	① 해당 재화가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		① 해당 제품이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	① 해당 재화가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	①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	① 해당 재화가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의하여 생산될 것	① 해당 재화가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			
	② 해당 재화의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 소재 제		②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 소재 제	② 해당 재화의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 소재 제	② 해당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② 해당 재화의 최종 생산공정이 국내에 소재	② 해당 재화의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 소재	① 해당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① 해당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① 해당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조시설에서 이루어질 것		조시설에서 이루어질 것	조시설에서 이루어질 것	라 국내에서 생산될 것	한 생산시설에서 이루어질 것	한 제조시설에서 이루어질 것	라 국내에서 생산될 것	라 국내에서 생산될 것	라 국내에서 생산될 것
	③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		③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	③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			③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	②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될 것		
				④ 재료비 중 내국인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소재·부품·원재료의 비용이 차지하는	③ 해당 재화가 그 생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종				② 해당 재화의 생산에 사용된 부품·소재·장비 중 내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소	③ 해당 재화가 그 생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종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비중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료하는 과세연도에 제10조제1항 제2호의 국가전략기술사업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 (위탁 포함)				재·장비의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료하는 과세연도에 제10조제1항 제2호의 국가전략기술사업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될 것 (위탁 포함)
	○공제율: 15%(김태년의원안, 신영대의원안), 20%(정	○공제율: 10%	○공제율: 판매가격의 10% 이하	○공제율: 10%	○공제율: 10%	○공제율: 15%(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	○공제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 감면율	○공제율: 생산비용의 3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공제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공제율: 10%(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경우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일영의원안)					*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년간 기존 공제율 적용		하는 품목별 감면율		20%)
	○공제한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상생협력 촉	○공제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	○공제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공제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	○공제한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상생협력 촉	○공제한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상생협력 촉	○공제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40%	○공제한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상생협력 촉	○공제한도: 내국인의 해당 과세연도별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공제한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의 10%(김태년의원안), 20%(정				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의 10%	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의 25%		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의 30%	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	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 단,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가 공제총액을 넘지 못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한도 설정(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의 20%	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의 10%
	○적용기한: 2035. 12. 31.	○적용기한: 2035. 12. 31. 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최	○적용기한: 2035. 12. 31. 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최	○적용기한: 2030. 12. 31.	○적용기한: 2028. 12. 31.	○적용기한: 2035. 12. 31.	○적용기한: 2035. 12. 31.	○적용기한: 2035. 12. 31.	○적용기한: 2035. 12. 31.	○적용기한: 2030. 12. 31.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초 판매 연도부터 10년 이내까지	초 판매 연도부터 10년 이내까지							
	○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 상당 투자세액공제액은 전체 공	○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 상당 투자세액공제액은 전체 공	○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 상당 투자세액공제액은 전체 공		○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 상당 투자세액공제액은 전체 공				○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이 재화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통합투자세액공제 합계액을	○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 상당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제금액에서 차감	제금액에서 차감	제금액에서 차감		제금액에서 차감				5년간 균등분할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액에서 차감	은 전체 공제액에서 차감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지원 배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지원 배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지원 배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지원 배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지원 배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지원 배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지원 배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지원 배제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20년간 이월공제 허용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최저한세 적용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사후추징: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공제액 추징	
	○시행일: 2026. 1. 1.	○시행일: 2026. 1. 1.	○시행일: 2026. 1. 1.	○시행일: 2026. 1. 1.	○시행일: 2026. 1. 1.	○시행일: 2026. 1. 1.	○시행일: 2026. 1. 1.	○시행일: 2026. 1. 1.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시행일: 2026. 1. 1.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김태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전략기술재화를 생산·판매하는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년의원안) 이법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정일영의원안)	부터 적용		경우부터 적용		부터 적용				

* 김태년의원안 2025. 3. 7. 발의(의안번호 8735), 정일영의원안 2025. 3. 13. 발의(의안번호 8885), 진성준의원안 2025. 3. 21. 발의(의안번호 9267), 안도걸의원안 2025. 3. 25. 발의(의안번호 9338), 신영대의원안 2025. 4. 17. 발의(의안번호 9937), 정태호의원안 2025. 6. 12. 발의(의안번호 10777), 김은혜의원안 2025. 8. 18. 발의(의안번호 12202), 김상훈의원안 2025. 8. 18. 발의(의안번호 12218), 박지혜의원안 2025. 9. 5. 발의(의안번호 12733), 박성민의원안 2025. 9. 24. 발의(의안번호 13224), 최은석의원안 2025. 10. 21. 발의(의안번호 13656), 윤영석의원안 2025. 10. 27. 발의(의안번호 13727)

현 행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상훈의원안
<신 설>	○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 세액공제에 대한 환급 및 제3자 양도 특례 규정 ○ 대상: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 세액공제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①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② 법인세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할 경우	○ 전략산업 국내생산 세액공제에 대한 환급 특례 규정 ○ 대상: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2개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내국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생산한 전략산업제품(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한정)에 대하여 전략산업 국내생산 세액공제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국가전략기술재화생산비에 대한 환급 특례 규정 ○ 대상: 국가전략기술재화생산비에 대하여 공제를 받은 내국인 중 국가전략기술재화를 생산하는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소재하고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과세연도에 연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공제할 세액보다 적어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대한 환급 및 제3자 양도 특례 규정 ○ 대상: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①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②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현 행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상훈의원안
	○ 내용: -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 또는 제3자 양도(정일영의원안) - 미공제금액에 기업유형 및 투자시점별 비율을 곱한 금액 환급 또는 제3자 양도(신영대의원안) ① 중소·중견기업: 50%(~'26), 70%('27~'28), 100%('29~'30) ② 초기투자기업: 50%(~'26), 이후 100% ③ 그 외: 30%(~'26), 50%('27~'28), 70%('29~'30))	○ 내용: 미공제금액의 50% 환급	○ 내용: 미공제금액의 50% 환급	○ 내용: -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 또는 제3자 양도
	○ 적용기한: 2028. 12. 31. 또는	○ 적용기한: 없음	○ 적용기한: 없음	○ 적용기한: 2035. 12. 31.

현 행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상훈의원안
	2035. 12. 31.(정일영의원안) 2035. 12. 31.(신영대의원안) ○ 세액공제 이월공제 미적용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하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분부터 적용(정일영의원안) -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신영대의원안)	○ 세액공제 이월공제 미적용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진성준의원안) - 이 법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안도걸의원안)	○ 세액공제 이월공제 미적용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 이 법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세액공제 이월공제 미적용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 정일영의원안 2025. 3. 13. 발의(의안번호 8885), 진성준의원안 2025. 3. 21. 발의(의안번호 9267), 안도걸의원안 2025. 3. 25. 발의(의안번호 9338), 신영대의원안 2025. 4. 17.(의안번호 9937), 정태호의원안 2025. 6. 12. 발의(의안번호 10777), 김상훈의원안 2025. 8. 18. 발의(의안번호 12218)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반도체 등의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생산비용에 대하여(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전략산업제품”)에 관한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전략산업제품을 최종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판매가격(진성준의원안) 또는 생산비용(안도걸의원안)에 대하여 일정 비율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지혜의원안은 재생에너지 설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에 대하여 생산량 또는 생산비용에 품목별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려는 것이고, 박성민의원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의 생산비용에 품목별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안은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철강 관련 재화, 그 밖에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국가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판매 수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한편, 세액공제 이후 5년 이내에 국내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시설

을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사후추징 규정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안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신성장·원천기술사업 및 국가전략기술사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대하여 10%(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경우 20%)의 공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이에 더하여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및 김상훈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고,

진성준의원안과 안도걸의원안은 3년 연속 결손금[1]이 발생한 내국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생산한 전략산업제품 중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한정하여 전략산업 국내생산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환급 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이며,

정태호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재화 생산비용 공제를 받은 내국인 중 해당 재화를 생산하는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또는 접경지역[2]에 소재하고 2년 연속 결손금이 발생한 내국인을 대상으

---

1)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결손금이란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고(「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함(「법인세법」 제14조제2항).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로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을 허용하려는 것임.

[개정안별 비교]

구 분	김태년 의원안	정일영 의원안	신영대 의원안	진성준 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박지혜 의원안	박성민 의원안	김은혜 의원안	김상훈 의원안	최은석 의원안	윤영석 의원안
공제 대상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 약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등 국가전략 기술을 활용한 재화	재생에너지 설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 약품, 인공지능, 소형모듈원자로, 양자컴퓨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 등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철강 관련 재화, 그 밖에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국가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탄소중립, 항공・우주, 첨단소재・부품・장비, 방위산업, 발전시스템, 원자력 등 신성장・원천기술 사업 및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이동 수단, 바이오의 약품 등 국가전략 기술사업

구 분	김태년 의원안	정일영 의원안	신영대 의원안	진성준 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박지혜 의원안	박성민 의원안	김은혜 의원안	김상훈 의원안	최은석 의원안	윤영석 의원안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판매처	국내 판매분 한정								무관		국내 판매분 한정	무관
공제 수준	생산비용의 15%	생산비용의 20%	생산비용의 15%	판매가격의 10%	판매가격의 1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	출고가격의 1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	생산량 또는 생산비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 감면율을 곱한 금액	생산비용의 3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 감면율을 곱한 금액	생산비용의 10%	생산비용의 15%(중견 20%, 중소 25%)	판매수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생산비용의 10% (수도권 밖은 20%)
공제 요건	①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 ② 국내 소재 제조시설에서 최종 제조공정 진행 ③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 ④ 재료비 중 내국인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소재·부품·원재료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정 비율 이상일 것(정태호의원안)							① 국내 생산 ②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	① 국내 생산 ② 5년 이내에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를	①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 ② 국내 소재 제조시설에서 최종 제조공정 진행	① 국내 생산 ② 생산에 사용된 부품·소재·장비 중 내국인이 국내 생산	① 국내 생산 ② 5년 이내에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

구 분	김태년 의원안	정일영 의원안	신영대 의원안	진성준 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박지혜 의원안	박성민 의원안	김은혜 의원안	김상훈 의원안	최은석 의원안	윤영석 의원안
									신청한 내국인이 제조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인이 제조
공제 한도 (소득세)	-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의 20%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의 10%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의 30%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의 40%	-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의 20%	-
공제 한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 (단, 별도 한도 설정 가능)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20%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10%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30%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40%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30%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5%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
적용 기한	2035. 12. 31.			2035. 12. 31. 까지 판매 시 최초 판매연도부터 10년 이내		2030. 12. 31.	2035. 12. 31.		2028. 12. 31.	2035. 12. 31.		2030. 12. 31.
기타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 상당 투자세액공제액은 공제금액에서 차감					-		최저한세 적용	-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이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구 분	김태년 의원안	정일영 의원안	신영대 의원안	진성준 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박지혜 의원안	박성민 의원안	김은혜 의원안	김상훈 의원안	최은석 의원안	윤영석 의원안
											재화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통합투자 세액공제 합계액을 5년간 균등분할 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액에서 차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공제금액에서 차감
사후 추징	-										5년 이내 국내생산 중단 또는 국외이전 시 공제액 추징	-
미공제 금액	환급 불가	미공제금액 발생 시 환급		① 3년 연속 결손금 발생		① 2년 연속 결	환급불가			미공제금액 발생	환급불가	

구 분	김태년 의원안	정일영 의원안	신영대 의원안	진성준 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박지혜 의원안	박성민 의원안	김은혜 의원안	김상훈 의원안	최은석 의원안	윤영석 의원안
환급요건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생산한 전략산업제품 중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한정		손금 발생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또는 접경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정				시 환급		
환급률	-	100%	30%~100%	50%			-			100%	-	
미공제 금액 제3자 양도특례	양도 불가	양도 가능		양도 불가			양도 불가			양도 가능	양도 불가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음.

첫째,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생산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각국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의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청정연료 사용 자동차 산업 지원, 기후변화 대응 노력 등에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을 2022년 8월에 제정하였음.

IRA에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이하 "AMPC") 관련 규정이 있는데, AMPC란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 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음[3].

AMPC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경제적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등을 활용한 재화에 대한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임.[4]

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4. 10. 25.
4) 다만, 2025년 7월 미국의 대규모 감세법안 통과에 따라 당초 2032년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차 세액공제가 2025년 9월말 조기종료되었고,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세액공제 역시 2027년말 조기폐지가 예정되어 미래형 이동수단 생산 및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유인은 일부 감소한 것으로 보임.

둘째, 국가전략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에 대하여 연구개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상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연구개발단계와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단계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품의 직접적인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없음.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 투자, 생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세제지원 제도가 구축되어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및 생산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셋째, 국가전략기술 등 생산세액공제와 더불어 환급 및 제3자 양도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손실 발생 또는 최저한세 등으로 세제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생산세액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됨.

손실이 발생하거나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은 세액공제의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여 공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 이후 실제 이윤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첨단기술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단계에 납부세액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미공제금액에 대한 직접

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통해 완화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세액공제의 '양도'와 관련한 입법례는 없으나 '환급'과 유사한 구조의 근로장려금 제도(EITC; Earned Income Tax Credit)[5], 자녀장려금 제도(CTC: Child Tax Credit)[6]가 시행되고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하여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등 투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분야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산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5)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층을 직접적으로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정책대상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금액 등에 따라 차등화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개념으로서 미국에서 최초로 고안되어 197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6)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4년부터 시행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			추가 주)
	대	중견	중소	
일반 (당기분 방식)	최대 2	8~20[1]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2]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3]	40	최대 10

주)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1」(~3년)20%, (4~5년)15%, (6년~)8%

2」(~3년)25%, (4년~)20%

3」(~3년)35%, (4년~)30%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7.5[1]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2]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3]	25	
반도체 분야	20	20, 25[4]	30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3년)7.5%, (4년~)5%

2」(~3년)9%, (4년~)6%

3」(~3년)20%, (4년~)15%

4」(~3년)25%, (4년~)20%

둘째, 세액공제의 대상 및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각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최종 생산 및 판매할 경우 소요되는 생산비용의 일정 비율 또는 판매가격이나 판매량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인데, 기획재정부는 공제대상 제품 및 생산비용의 범위 설정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원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7].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신고 기준 국가전략기술 분야 통합투자세액공제 수혜법인은 29개이고 R&D 세액공제 수혜법인은 51개이지만, 국세청,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수는 추정이 곤란하다는 입장임.[8]

또한, 공제대상이 최종재에 한정되는지, 국가전략기술 등을 활용한 중간재까지 생산비용 공제를 적용할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음.

한편, 다수의 개정안은 공제요건으로 해당 재화 또는 제품이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 사용여부에 대한 검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공제요건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임.

---

7)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낮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했다는 이유로 해당 자동차 생산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8)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정확한 기업 수는 확인할 수 없지만 표본조사 등에 기반하여 추정한 결과 이차전지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404개,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는 818개 정도임.

셋째, 김태년의원안 등 9건의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이 반면,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및 윤영석의원안은 판매 국가와 무관하게 공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국내 판매 요건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동 제도가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국내 판매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조세지출 규모 등을 감안한다면 국내 판매량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기획재정부는 국내 판매 요건과 무관하게 생산비용 공제는 수입품에 대한 차별조치이므로 통상규범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연구용역을 통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넷째, 세액공제 환급특례 신설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정일영의원안은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특례 적용기한을 비일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고[9] 동일한 특례를 중복적으로 규정[10]하고 있으므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며, 신영대의원안은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특례 적용기한을 2035년 말까지 설

9) 정일영의원안 제144조의2제2항에 따르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 세액공제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미공제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 반면, 안 제144조의4에 따르면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동일한 환급 특례 적용이 가능함.

10) 안 제144조의2제2항, 제144조의4제1항 및 제2항

정하고 있는 반면 환급세액 계산을 위한 비율에 대해서 2030년 말까지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섯째, 박성민의원안을 제외한 11건의 개정안은 신설하고자 하는 세액공제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정일영의원안 등 6건의 개정안은 미공제금액의 환급 특례를 신설하고 있음.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들에 대해 세액공제의 환급 및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최저한세 제도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11]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주더도 세부담 형평성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여섯째,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할 경우 서민, 농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동일한 요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11)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도권 외에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상황으로, 올해 말 연구용역 종료 시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여부, 공제대상 등을 설정할 계획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지원방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 및 부처간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54